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3,966,245	23,818,987
일반회계	700,537,812	21,016,134
특별회계	93,428,433	2,802,853
공기업특별회계	65,766,898	1,973,00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924,977	1,017,74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841,921	955,258
기타특별회계	27,661,535	829,846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7,438,846	223,16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54,469	160,634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83,053	44,492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15	93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2,212,703	66,381
주택사업특별회계	2,484,990	74,5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88,000	68,640
기반시설특별회계	1,236,088	37,083
경영사업특별회계	250,000	7,500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502,622	45,079
주차장특별회계	3,407,649	102,22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62,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